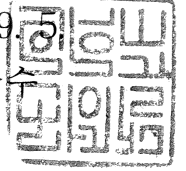


달성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

의 안	2362
번 호	

제출일자 : 2023. 9. 5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위탁기간 만료 도래 및 수탁기관 재계약 의사표시에 따라 현 수탁기관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, 적격으로 의결되어 재계약함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의 명칭 :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위탁

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5항
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5항
-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
-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업무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법인·단체로 관리·운영사무 위탁 필요

다.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

-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

라. 소요예산

- 2023년도 예산 2,315백만원(시비 736, 군비 1,579)

마. 조직 및 구성

구 분	계	관장	사무국장	직 원
인 원	29	1	1	27

바. 위탁대상 현황

시설명	소재지	개관일	위탁기간	위탁 기관
달성군 장애인복지관	논공읍 논공로 242	2006.11.01	2023.11.01.~ 2028.10.31.	(사)대구광역시지체 장애인협회달성군지회

사. 위탁기간 : 2023.11.01. ~ 2028.10.31.

아. 수탁기관 선정 방식

- 운영위탁심의위원회 성과 평가 실시 후 70점 이상 시 재계약

자.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일정

- 2023. 7. 6 : 재계약 서류 접수
- 2023. 7. 19 :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평가 심의
- 2023. 7. 26 : 재계약 계약 체결
- 2023. 11. 1 : 위·수탁 개시

차. 운영위탁심의위원회(민간위탁심의위원회) 성과평가 결과

- 평균 89.5점(적합)
- ※ 운영위탁심의위원회 심의자료 불임첨부

3. 근거법령

-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
-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

☐ **사회복지사업법**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☐ **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**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☐ **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**

제9조(재계약)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,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
☐ **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**

제7조(운영)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자가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.

참고
운영평가 심의의결 자료

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

심사기준	심 사 항 목	배점	심사척도(점수)			평가 점수
			우수 (상)	보통 (중)	미흡 (하)	
합 계		100				
Ⅰ. 수탁자의 적격성 (30점)	1. 법인유형 및 설립목적 적합성	5	5	3	1	
	2. 법인조직 및 법인대표·이사회의 적합성	5	5	3	1	
	3.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운영 실적	10	10~7	6~4	3~1	
	4. 법인의 보유재산	10	10~7	6~4	3~1	
Ⅱ.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(50점)	5.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전문성	5	5	3	1	
	6. 시설장(내정자)의 전문성	5	5	3	1	
	7. 법인의 예산규모	5	5	3	1	
	8. 법인전입금의 재원출처 적정성	5	5	3	1	
	9. 사업계획 및 시설·재정운영의 전문성, 현실성, 적정성 등	30	30~20	19~10	9~1	
Ⅲ. 지역사회와 의 협력적 관계 조성능력 (20점)	10.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	10	10~7	6~4	3~1	
	11.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방안	5	5	3	1	
	12. 지역사회 자원 동원방안	5	5	3	1	

[붙임5]

심 사 집 계 표

☐ 달성군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(재계약)선정

☐ 심사총점 및 평균

구분	심사결과		위원1	위원2	위원3	위원4	위원5	위원6
	총 점	평균						
점수	537	89.5	91	89	87	91	91	88

위 사실을 확인합니다.

2023. 7. 19 .

종합채점 검토자 : 장애인복지담당 이 승 훈 (서명)

종합채점 확인자 : 희망지원과장 박 영 마 (서명)

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

[붙임6]

심 의 의 결 서

안 건	달성군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(재계약) 선정
의 결 주 문	(사)한국지체장애인협회대구시달성군지회의 달성군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재계약이 (적격, 부적격) 한 것으로 의결함. * 심의결과 참석위원 6 명, 합계 537 점, 평균 89.5점
2023년 7월 19 일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장 김 창 업 (서명) 부위원장 나 상 권 (서명) 위 원 김 중 구 (서명) 위 원 이 현 중 (서명) 위 원 남 주 연 (서명) 위 원 이 무 회 (서명)	